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4. 11.

장 호 섭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 설명서

제안자: 장호섭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안은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4조 및 제5조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지도점검과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2024년 11월 6일부터 2024년 11월 17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호섭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4108
----------	----------

발의연월일 : 2024. 11. 6.

발 의 자 : 장호섭, 김해철, 박종길,
황국주, 김정희, 박정환,
남현주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안 제4조~제5조)
라. 지도점검과 관계기관 협력(안 제6조~제7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이돌봄지원법」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
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
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교류·협력 등)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아이돌봄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19.>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19.>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0. 5. 19.>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 5. 19.>

⑤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제3항에 따른 적성·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19.>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2020. 5. 19.>

제28조(지도 및 명령)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제29조(질문 및 검사)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보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운영·관리·제공 등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